

THE INCLUSIVE BUCHEON

2021년도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 가이드

부
리
임

2 0 2 1 년
부천시 생활임금
1 0 , 5 0 0 원

비
망
창의·혁신·포용

본 가이드북은 부천시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제작 · 배포합니다.

생활임금신고센터(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 기준 등 문의, 미적용사례 접수 및 관련 신고

- 📍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원미어울마당 4층)
- ☎ FAX 032-611-3813
- ☎ TEL 032-322-3814~5 🌐 홈페이지 www.bcnsj.org



THE INCLUSIVE BUCHEON CONTENTS

04	개요
05	생활임금 living wage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
06	생활임금 시행절차
07	추진경과
08	연도별 적용현황(2014~2021년)
10	2021년도 부천시 생활임금
14	2021년도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예시 [붙임1] 달라진 기준 및 적용 [붙임2] 통상임금 [붙임3] 2020년 직접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붙임4] 부천시생활임금조례

개요

1. 목적

- 생활임금은 부천시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여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4월부터 도입·시행
※2013년 12.12. 전국 최초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의한 조례 제정
- 생활임금의 시행에 있어 적용 통일성과 원활한 시행을 지원·권고하기 위하여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자 함.

2. 관련근거

부천시생활임금조례 (2013.12.12. 제정)

3. 적용범위

부천시생활임금조례 제3조 (적용대상)

- 부천시 소속 근로자
- 부천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민간위탁) 소속 근로자

4. 정책목표

2021~2030년 (10개년) 최저생계비 100% 달성 (보건복지부, 3인)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달성 목표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93%			96%			99%			100%

※ 최저생계비 자체 자연상승분이 있으므로 연도별 달성목표 조정, 2030년 100% 달성

5. 산입항목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상)

6. 활용원칙

- 본 가이드북은 2021년 부천시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안내 자료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함.

생활임금 LIVING WAGE

지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 「부천시생활임금조례」 2013.12.12. 제정. 2014. 4월 시행



부천시 생활임금 위원회

부천시 생활임금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노사민정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 담당

※ 「부천시생활임금조례」 제5조(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주요기능

- 생활임금 자문, 조사·연구, 정책 등에 관한 사항
-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및 해석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시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
-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 근로자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 사업자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 등

생활임금 시행절차

04~06월

생활임금 실태조사

생활임금위원회 부천시 소관부서

- 실질 생활임금 적용현황 파악
- 지역 특성 고려, 수준 및 범위 검토

07~08월

생활임금(안) 결정·제안

생활임금 위원회

- 실태조사 결과기반 소요예산 산출
- 차년도 생활임금 결정제안

09월

결정고시

부천시장

- 본협의회 확정된 차년도 생활임금 고시

최저임금 결정후
60일 이내 결정·고시

08월

생활임금 심의·확정

부천시지역 노사민정협의회(본협의회)

-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제안된
차년도 생활임금 심의·확정

09 ~ 11월

생활임금 편성

해당부서/기관 등

- 결정고시된 차년도 생활임금에
따른 적용대상자 선정, 예산 편성

차년도 01~12월

생활임금 적용

해당부서/기관 등

- 적용 대상 근로자 생활임금 지급



추진경과

- 2011 12.20 한국노총 부천시부의 제안으로 노사민정 본회의 안건 상정
- 2012 04. 생활임금조례 추진위 구성실무협의회 의결
05. 생활임금조례 추진위 구성 및 사업추진 본회의 의결
07.11 1차 추진위, 생활임금의 목적과 지역차원에서의 의미 논의
08.07 2차 추진위, 조례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범위 및 내용 검토
09.11 3차 추진위, 생활임금에 담아야할 내용 논의 (외국사례 참조)
10.11 4차 추진위, 현행법 내 제정 가능한 조례 논의 (법률검토 요구)
11.13 5차 추진위, 생활임금 구체화 (지자체 예산지원범위 설정)
11.27 6차 추진위, 부천시의회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 합의
- 2013 02.01 7차 추진위, 부천시 및 소속 근로자로 제한하는 생활임금 수정안 마련
06.17 생활임금제도화에 따른 전문가 토론회 개최 (법적 쟁점)
10.25 부천시의회 생활임금조례 의결 (경기도 재의 요구)
11.13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재의 (경기도 재의 요구 수용)
12.12 부천시의회(강동구/안효식) 조례 재의결 (28명 중 24명 찬성), 조례 제정
- 2014 01.20 7차 추진위, 부천시 및 소속 근로자로 제한하는 생활임금 수정안 마련
02.18 생활임금제도화에 따른 전문가 토론회 개최 (법적 쟁점)
04.01 부천시의회 생활임금조례 의결 (경기도 재의 요구)
- 2018~2020 민간위탁기관 근로자까지 전면 확대(순수시비 재원 임금 근로자)
- 2020 08.18 부천시생활임금조례 전면 개정, 적용대상 확대
- 2021 01.~ 민간위탁기관 근로자까지 전면 확대(국도비 재원 임금 근로자 전면 확대)

연도별 적용현황

2014~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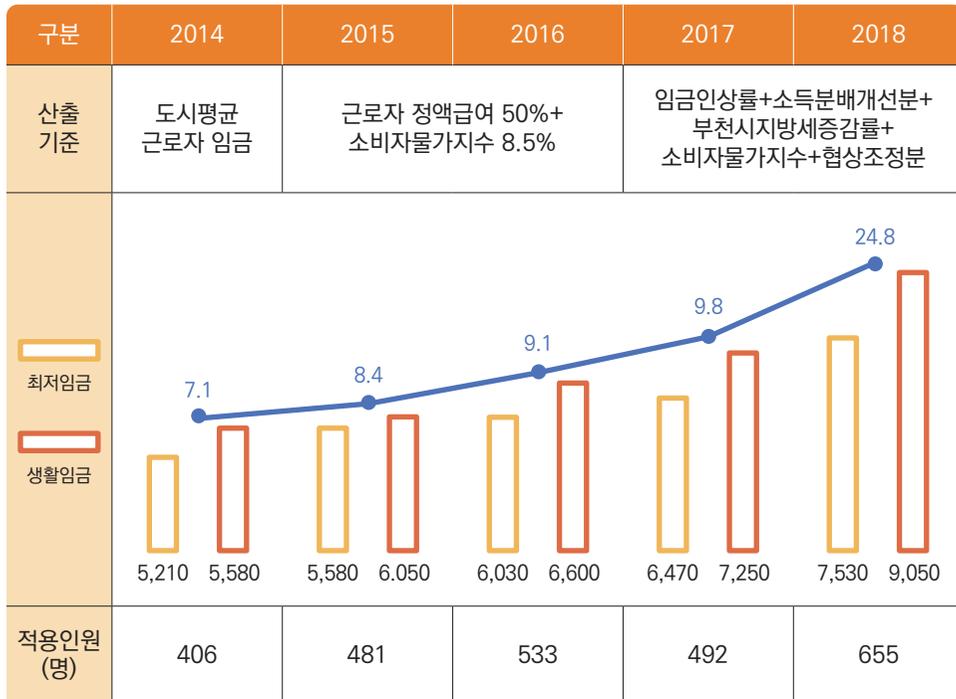
1. 연도별 결정기준 및 적용(2014~18년)

• 생활임금액 결정고시

(단위: 년/원/%)

연도	최저 임금	생활임금				결정고시
		시급	월급 (209시간 기준)	인상률	심의확정	
2014	5,210	5,580	1,166,220	7.1	2014.02.19.	-
2015	5,580	6,050	1,264,450	8.4	2014.08.21.	-
2016	6,030	6,600	1,379,400	9.1	2015.09.08.	2015.09.15.
2017	6,470	7,250	1,515,250	9.8	2017.09.01.	2016.09.05.
2018	7,530	9,050	1,891,450	24.8	2017.08.23.	2017.09.14

• 산출기준 및 적용



2.연도별 결정기준 및 적용(2019~21년)

· 생활임금액 결정고시

(단위: 년/원/%)

연도	최저임금	생활임금				결정고시
		시금	월금 (209시간 기준)	인상률	심의확정	
2019	8,350	10,030	2,096,270	10.8	2018.08.22.	2020.08.29
2020	8,590	10,400	2,173,600	3.7	2019.09.09.	2019.09.17.
2021	8,720	10,500	2,194,500	1.0	2020.08.24	2020.09.04

· 산출기준 및 적용

구분	2019	2020	2021
산출기준	최저임금인상률+ 지방세수입전망+ 생활물가지수+ 협상조정분	최저임금인상률+ 협상조정분	최저생계비(91%)+ 협상조정분
적용인원 (명)	770	864	2,560

2021년 부천시 생활임금

1. 적용기간

2021. 1. 1. ~ 12. 31

2. 부천시 생활임금액

시급 10,500원 (최저임금 대비 120.4%)

결정 단위	시간급(10,500원)
	월 환산액 2,194,500원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3. 정책목표

부천시 생활임금 10,000원 달성, 적용대상 확대를 기반으로 한 공공부문 최소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4. 결정고시 절차

- 생활임금 및 적용대상 결정·제안 2020.2월~8월
 - 제27차 회의 (현안 쟁점정리) 02.10
 - 제28차 회의 (정책목표와 적용범위 1차 합의) 03.18
 - ※적용대상 확대 검토, 분석
 - 제29차 회의 (생활임금 적정구간 검토, 폐지) 04.29
 - ※정책목표(10,000원 달성에 따른 공공부문 최소 임금가이드라인 제시(통계활용 검토 등)
 - ※적정구간 폐지(3/5 표결)
 - 제30차 회의 (정책목표 결정) 05.27
 - ※정책목표(10,000원 달성에 따른 공공부문 최소 임금가이드라인 제시, 10년 내최저생계비 100% 달성) 결정
 - ※적용대상 확대(재원구분, 고용형태 무관 전체 적용 결정, 5/7 표결)
 - 제31차 회의 (2021년 생활임금안 제시) 08.11
 - 제32차 회의 (2021년 생활임금 결정제안 합의) 08.18
- 부천시생활임금조례 개정 2020.07.20
 - 적용대상 확대 기반 조성(직고용,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민간위탁기관 소속근로자 국도비 재원 임금 근로자로의 전면 확대)
 -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 기능 강화 등 포함
- 생활임금 심의·의결 2020.08.24.~28
 - 코로나 19 대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제53차 본협의회는 서면심의로 진행함(서면심의회기간 8.24.~8.28.)
- 2021년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시 홈페이지) 2020.09.03

5.산출기준

▪ 최저생계비(91%, 10,408원) + 조정분(0.87%, 92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달성 목표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93%			96%			99%			100%

< 참조, 달성목표 >

- 산출기준 활용 :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3인 기준, 매년 8월 발표)
- 최저생계비 자체 자연상승분이 있으므로 연도별 달성목표 조정, 2030년 100% 달성

6.생활임금 산입항목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

7.적용대상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제3조(적용대상) 준용

- ① 부천시 소속 근로자
 - ②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③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민간위탁) 소속 근로자
- ※ 인건비 재원구분(국/도/시비) 및 고용형태(상시/일시) 등 차별폐지

< 참조, 부천시생활임금조례 >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각 호의 대상자 중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연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 사무 외 수요예측 불가능한 사무에 고용된 근로자
 2.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

▪ 제외가능대상(조례 제3조 ②항)

- ①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 사무 외에 수요예측 불가능한 사무에 고용된 근로자
- ②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

※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란 취업 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실업·복지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경과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말함

※ 예외조항 <붙임3>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참조

< 참조, 직접일자리사업지침* 관련 참고사항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의한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대상은 생활임금 제외가능(실업대책, 복지대책의 일환)

- 직접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사업별로 성과기준을 설정 하여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매년 사업변경**이 있음. 따라서 2021년 생활임금 적용제외 대상은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지침에 준하되, **차기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지침이 고시(매년12월~1월경)되면 바뀐 고시에 맞게 새로 적용할 것.**

6.근로조건 하락방지

-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 10,000원 달성과 적용대상 전면 확대’ 결정에 따라 기존의 임금역전현상 방지 등 적정구간 설계 방식을 폐지하기로 함.
단, 생활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하락할 수 없다.
- 2020.12.31.기준 생활임금 구간적용자 중 2021년 생활임금액 적용으로 실질임금 하락(총 연급여 기준)이 예상되는 근로자는 2020년 적정구간표를 준용, 임금 보전(해당구간 자연 탈피시까지). 단, 상위구간으로 진입 금지

< 참조. 2020년 생활임금 적정구간표 >

(단위: 원)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구 간 별 급 시	8,590	8,591 ~ 9,410	9,411 ~ 10,100	10,101 ~ 10,660	10,661 ~ 11,110	11,111 ~ 11,400
생활임금 적용액	10,400	10,700	10,940	11,140	11,300	11,400

< 참조. 근로자 근로조건 참고법률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최저임금법]

제6조 2항(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00709, 선고일자 : 2019-11-14]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 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위 판례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200, 회시일자:2008-11-25]

조례와 어긋나는 단체협약의 효력 회시

1. 자치단체의 조례가 국악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 근로기준법 제93조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악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조례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 해당 될 것으로 봄.
2. 따라서, 노조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임.

2021년 생활임금 적용예시

1. 차액보전방식

【예시1】 시급으로만 편성된 경우

구 분	급여액		주 40시간 (월 209시간)	비고
	급여액	적용여부		
기본시급	8,720	○	1,822,480	기간제근로자

▪ 생활임금 적용

- 시급 8,720원인 경우 생활임금액은 10,500원임
10,500원 - 8,720원 = **1,780**원을 생활임금 항목으로 편성
※ 임금 이외에 임금과 연동되는 4대 보험료, 초과근무수당 등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

【예시2】 시급+수당(부대비,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 가족수당, 교통비)으로 편성된 경우

※ 실비변상적 금품 지급하는 경우는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

구 분	급여액		주 40시간 (월 209시간)	비고
	급여액	적용여부		
기본시급	8,720	○	1,822,480	
교통비	1일 3,000	×	66,000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 (통상임금 ×)
가족수당	50,000	×	50,000	가족수에 따라 지급 (통상임금 ×)
급식비	130,000	○	130,000	정액지급(통상임금 ○)

▪ 시급 산출방법

- $[(\text{기본시급} \times 209) + \text{통상임금 해당 수당}] \div 209\text{시간}$
= $(8,720\text{원} \times 209) + 130,000\text{원} \div 209 = 9,340\text{원(원단위절사)}$

▪ 생활임금 적용

- 10,500원 - 9,340원 = **1,160**원을 생활임금 항목으로 편성
※ 임금 이외에 임금과 연동되는 4대 보험료, 초과근무수당 등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 해야함

【예시3】 기본 월급과 각종 수당으로 편성된 경우(구간 적용 보전 예시)

※ 2020.12.31. 기준 구간 적용자인 경우

구 분	급여액		주 40시간 (월 209시간)	비고
	급여액	적용여부		
기본월급	2,000,000	○	2,000,000	공무직 등 호봉제 근로자
직책수당	200,000	○	200,000	정액지급
급식비	100,000	○	100,000	정액지급
교통비	50,000	○	50,000	정액지급

· 시급 산출방법

- (기본월급 + 통상임금 해당 수당) ÷ 209시간 = 2,350,000 ÷ 209 = 11,240원
 - ▶ 2021년 기준 생활임금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구간폐지에 의한 임금보전이 필요함.
 - ▶ 따라서 2020년 적정구간표에 의거하여, 6구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이 11,400원에 해당할 때까지 임금 보전 필요.
 - ▶ 적용금액(11,400원) - 통상임금(11,240원) = **160원**을 생활임금 항목으로 편성
 - ※ 임금 이외에 임금과 연동되는 4대 보험료, 초과근무수당 등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

2. 생활임금 시급 적용방식

당 근로자의 월 급여액 중 생활임금대상 월 총액(통상임금, 기본급+고정·일률적 수당액) 파악 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 산출

· 주 40시간 근로자

(월 기본급+월 고정수당)/209시간

· 주 40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주휴 발생)

※ 1주 40시간 근로자는 1주 8시간 주휴를 주니까

1주 00시간 근로자의 주휴는 00시간/40시간×8 시간의 산식으로 구함.

(예시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근로자

① 실근로시간 : 1주 16시간 × 4.34주(1달 평균 주수) = 69.44 시간

② 주휴 : 16시간/40시간×8시간×4.34주 = 3.2 시간×4.34주 = 13.88 시간

- 소정근로시간 ①+② = 83.32시간

- 월 기본급 = 1,111,155원 + 고정수당 52,000원(정액 급식비)=1,163,155원

- 시급 = 1,163,155원/83.32 시간 = 13,960원

(예시2) 1주 소정근로시간이 27.5시간인 근로자

① 실근로 시간 : 1주 27.5시간 × 4.34주(1달 평균 주수) = 119.35 시간

② 주휴 : 27.5시간/40시간×8시간×4.34주 = 5.5 시간×4.34주 = 23.87 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①+② = 143.22시간

- 월 기본급 = 870,000원+ 고정수당 30,000원(직책수당) = 900,000원

- 시급 = 900,000원/143.22 시간 = 6,284원

·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주휴 발생안함)

(예시)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0시간인 근로자

① 실근로시간 : 1주 10시간 × 4.34주=43.4 시간

② 주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주휴 없음

- 월 소정근로시간 ①+② = 43.4시간

- 월 기본급 = 400,000원

- 시급 = 400,000원/43.4시간 = 9,217원

<붙임1>

2021년 달라진 기준 및 적용

Q 2021년 부천시 생활임금은 얼마인가요?

△ 2021년도 부천시 생활임금은 시급 10,500원이며, 209시간 기준(주 40시간) 월급여 2,194,500원입니다.

※ 2020.1.1.~12.31.(1년) 적용

Q 2021년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범위는?

△ 2021년부터 부천시 직고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 종사자 전체로

- ① 지방비 및 국도비 등 재원구분 없으며,
- ② 고용형태(비정규직/계약직/정규직 등)와 무관하여 전체 적용됩니다.

※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연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 사무 외 수요예측 불가능한 사무에 고용된 근로자
2.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

Q 생활임금 적정구간 폐지

△ 2013년 생활임금 설계 당시 임금역전현상, 근속기간 및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한 적정구간 (6구간, 최저기준선~최고 기준선)적용방식은 2021년도부터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적용대상 확대는 언제부터 인지?

△ 2021.1.1부터 적용함.

부칙 제2조(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Q 통상임금 범위와 기준은?

(가족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교통비 등)

▲ 부천시 생활임금에서 정의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급여의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으로 한다.

-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하며,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및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
- ※ 직책수당 : 직급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봄
- ※ 가족수당 : 직원 가족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보며,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음.
- ※ 상여금 :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는 지급시기 근무하는 자에 한해 지급되는 임금 성격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등 지급 당시 기준으로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시에도 1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통상임금에 포함함.
-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음

Q 복지관 소속 근로자의 생활임금 적용대상 여부

<질의내용>

복지관은 사회복지 인력 가이드라인 인건비를 적용하고 있음. 호봉제는 장기근로 경력자에 대한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생활임금으로 인하여 신입직원과 경력직 직원의 차이가 없어져 장기근로에 대한 의욕상실 및 근로자 간 임금 갈등 발생. 복지관 소속 전 직원이 생활임금 적용대상인지?

▲ 복지관은 부천시 사무 위탁기관으로 고용형태나 국고지원금, 순수시비 등 재원 구분 없이 전체 다 해당되며, 당해 연도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함. 2021년도 신규채용자 경우 시급 10,50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함. 단, 부천시 사무 위탁기관이더라도 ①자체 사업비를 투입 등 다음 연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 사무 외 수요예측 불가능한 사무에 고용된 근로자나 ②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의해 한시적 경과적 일자리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Q 도서관의 국도비 지원으로 수행하는 개관시간 연장사업 공무직은 생활임금 대상자 해당여부

▲ 2021년부터 생활임금 대상자임.



<붙임2>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해서 통상임금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되지만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가질 것,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 ※정기성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
 - ※일률성 :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 ※고정성 : 그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

구 분	임금의 특징	해당여부
기본시급	기본급여	통상임금
직무수당 (직책수당)	직책이나 직업상 수행한 사무에 대하여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급여	통상임금
면허수당	근로실적과 관계없이 해당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위험수당		통상임금
벽지수당		통상임금
물가수당		통상임금
연월차수당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됨으로 통상임금에 해당안됨

연장근로수당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됨으로 통상임금에 해당안됨	해당안됨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해당안됨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해당안됨
	최소한의 보장되는 성과급	통상임금
교통비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월정액)	통상임금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비	해당안됨
가족수당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해당안됨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급식비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월정액)	통상임금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급식비	해당안됨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지급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대부분 많음)	해당안됨
	특정시점이 되기전 퇴직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

<붙임3>

2020년 직접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금 직접 지원, 별도의 법령
이나 지침 없을시 우선적용 국가사무)

참여대상 주된 참여자가 취업취약계층에 해당

참여기간 통상 1년 미만 (최장 2년)

제공업무 해당 업무가 법령·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재량사업의 한시적 업무

- 낮은 실업소득 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노인 등 특정한 계층의 기본적 소득을 보조하는 일자리사업을 포함(노인일자리사업)
-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 봉사형 일자리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재능기부·사회공헌 등)

공공업무 지원형	정부·공공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보조·지원하는사업으로, 참여요건에 특별한 자격요건(학위·자격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다만, 공공부문의 고유업무 또는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보조업무를 일자리로 제공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사용하는 사업은 직접 일자리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 보조형	노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통상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단기간의 교육 이수만으로 참여가 가능
인턴형	청년·여성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연수 등을통해 일 경험 습득·경력 형성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사회봉사 · 복지형	퇴직자·청년 등에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로 활동 실비 지원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예시, 33개]

부처	세부사업	소유형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사회봉사복지형
고용부	사회공헌활동지원(사회공헌활동지원)	사회봉사복지형
	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소득보조형
	업종별재해예방(고위험업종안전보건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농림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식품분야해외인턴십지원, 농업법인취업지원)	인턴형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ODA, 글로벌농업인재양성)	인턴형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사회봉사복지형
	박물관진흥지원(등록사립박물관전문인력지원)	인턴형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예술인력육성2(예술인력재교육(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인턴형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이야기할머니현장활동 등)	사회봉사복지형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R&D) (출연연맞춤형인력양성사업)	인턴형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공업무지원형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	사회봉사복지형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 대한노인회외사업)	소득보조형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소득보조형
	장애인일자리지원	소득보조형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체인력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공공업무지원형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공업무지원형
	국제산림협력(해외산림인턴지원)	인턴형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서비스도우미)	공공업무지원형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소득보조형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여성인턴)	인턴형
행자부	국가기록물정리	공공업무지원형
	지역공동체일자리(지특)(마을기업, 취약계층공공근로사업)	소득보조형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하천쓰레기수거사업)	소득보조형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소득보조형
	환경지킴이 (1..자연환경안내원(정규직전환대상제외), 2.국립공원지킴이(재난구조대제외), 3.주민감시관리요원, 4.5대강환경지킴이)	소득보조형
농림부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농식품청년해외개척단)	인턴형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및일자리운영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인턴형
특허청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지원 (온라인위조상품재택모니터링지원)	소득보조형
해수부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청년수출개척단)	인턴형
행자부	공공기관빅데이터활용청년인턴십운영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인턴형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책지원형, 민간취업연계형)	인턴형

부천시생활임금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결정되어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3.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연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 사무 외 수요예측 불가능한 사무에 고용된 근로자
2.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 자문, 조사·연구,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및 해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근로자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사용자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⑤ 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제8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시의 재정상황,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③ 시장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부천시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 결정 후 60일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생활임금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 개선에 관한 사항 등

⑤ 위원회와 협의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11조(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② 운영부서는 시 노사협력 업무 담당부서 또는 협의회 사무국으로 한다.

③ 신고대상은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 신고방법은 전화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부서 및 법인·단체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신고자, 조사협조자, 자료제출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